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36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3
2.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동의철회권 신설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8. 21.
3.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

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등

☐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행사기간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자의 통지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및 제662조).

[illegible]

-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보다 단기인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제64조²⁾ 및 제662조)
-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를 신설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금청구권자가 일반 상사채권과 달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단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모르거나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가 어려워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음.
 -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³⁾

1) 개정안에 사용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자”, “보험회사”와 같은 표현은 「보험업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자”라는 용어가 사용됨.

2)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개정안은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이용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의 무력화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행사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반 상사채권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소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절차인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단기의 소멸시효 인정을 통하여 보험자의 안정적인 기금 관리·운영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임.

○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여⁵⁾

3) 2016. 5. 24.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참조

4)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의도적으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사의 해지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법제사법위원회, 의안번호 제210056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6).

5)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⁶⁾

-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재판상 청구, 최고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고, 「민법」상 소멸시효의 정지는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에 필요한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⁷⁾

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6)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금청구권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인 보험 사고 발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주관적 인식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과실의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과실이 있는 자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私法)관계에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 「상법」 제663조의 반대해석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약관에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연장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 내지 사적자치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2.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동의철회권 신설

-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동의 시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31조).

현 행	개 정 안
第731條(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 ・ ② (생 략) <u><신 설></u>	第731條(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당사자 사이에 철회 가능여부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서면동의를 철회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제731조제1항8) 동의 철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8)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않음.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게 되므로 보험금을 노린 고의의 보험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임.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고려도 들어있다고 해석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동의철회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와 관련된 권리를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⁹⁾).

□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동의철회권을 명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제5-13조 및 별표 15¹⁰⁾).

9) 「상법」 제731조, 제734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10)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에 따라

문 의 처
02)6788-5055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